

【 6 】 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번 호	
-------------	--

제출 연월일 : 2009. 3.
제 출 자 : 양주시 장

□ 개정이유

-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료에 관한 부분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조문 용어 수정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불확정 개념, 비현실적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사용료”를 “이용료”로 용어수정
- 수련시설 이용자 경합시 시설이용의 우선순위 신설 (안 제11조의 1)
-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료 시설별로 세분화 및 조문용어 수정 (안 제13조)
 - 청소년수련관 숙소 및 시설이용료, 실외수영장 이용료, 운동장 이용료로 구분
- 이용료 감면대상 세부적으로 명시 (안 제15조)
 - 양주시 관내 주민, 국민기초수급자 및 그 가족, 한부모가정 자녀, 등록장애인 청소년, 국가유공자 및 가족 또는 유족 등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불확정 개념사항과 비현실적 기준 정비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양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을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으로 한다.

제3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이용료”라 함은 수련관의 시설 일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낙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4조제4호 중 “시설 사용료”를 “시설 이용료”로 하고 같은조 제5호 중 “청소년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활동과 생활체육 활동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의 해지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시장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이용신청) ① 수련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주소, 성명, 이용할 시설, 이용목적,

이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의 수련활동 중에는 모든 시설의 이용에 우선한다. 단, 청소년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1(시설이용의 우선순위)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시설이용을 승낙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수련행사
2. 청소년 수련활동
3. 기업체 임직원 연수
4. 단체 세미나 활동
5.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
6. 기타 가족단위 이용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이용 제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지도자의 인솔없이 입소하는 청소년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이용료) ① 수련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이용 승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이용승낙의 취소)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낙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이용료를 체납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련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생간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이용료 감면)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공익을 목적으로 수련관을 이용하거나 시의 사책상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자녀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청소년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가족 또는 유족
- ② 시 지역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단체로 수련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준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관내 주민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이용료 반환) 이미 받은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종지된 경우
3. 시설등 사용일 5일이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임을 신고한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4. 시설등 이용일 이후에 이용하지 아니한 것임을 신고한 경우(다만, 당해일을 제외한 잔여일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이용중단 신고) 이용자는 이용승낙기간 만료전에 이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시장"을 "시장 또는 수탁자"로 "사용기간"을 "이용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제목 "(강사)"를 "(강사초빙 등)"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 "시장이"를 "시장 또는 수탁자가"로 하며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빙된 강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 중 "청소년기본법, 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재무회계규칙"을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양주시재무회계규칙」, 「양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자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가정복지과
입 안 자	실·과장	가정복지과장
	직위·성명	팽 옥 자
	담당	아동청소년팀장
	직위·성명	정 미 순
	담당자	정 미 순
성명·전화		(820-2301)

[별표]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제13조관련)

○ 숙소 및 시설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숙소이용료 (1박)	5,000	7,000	7,000	7,000	10,000
단체급식비 (3식)	9,000 (1식당 3,000)	11,400 (1식당 3,800)	12,000 (1식당 4,000)	12,600 (1식당 4,200)	15,000 (1식당 5,000)
수련활동비 (1일)	5,000	5,000	5,000	5,000	5,000
시설이용료 (1일)	1,500	1,500	1,500	1,500	1,500
대강당		200,000(1회 4시간)			
소강당		100,000(1회 4시간)			
세미나실		60,000(1회 4시간)			
캠프파이어		100,000(석유 및 장작)			
다목적구장		20,000(1회 4시간)			

※ 숙소이용료, 급식비, 수련활동비, 시설이용료(수련활동시)는 1인 기준 적용.

※ 시설이용료(수련활동시)는 강당, 세미나실, 운동장, 다목적구장이 포함.

※ 강당 및 다목적구장 이용료(1회 4시간 기준)는 수련활동이 아닌 경우로서 시설별 개별 신청시 적용

※ 기준시간 초과이용시 매시간 10%씩 가산.

○ 실외 수영장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초등학생 이하		중·고생		대학생이상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수련관 이용자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일반 이용자	5,000	3,000	6,000	4,000	7,000	4,500

※ 단체는 20명 이상 이용시 적용

※ 양주시민은 일반이용자(개인에 한함)일 경우 2,000원 할인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시)

※ 취사도구 및 주류 반입금지

○ 운동장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일반이용		체육경기행사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주간	30,000	40,000	150,000	225,000
야간	40,000	60,000	225,000	337,000
기준	<input type="radio"/> 일반 이용은 4시간 <input type="radio"/> 체육경기행사(직장 또는 단체경기행사)는 6시간			

※ 공휴일은 토·일요일, 법정공휴일로 한다.

※ 기준시간 초과 이용시 매시간 10%씩 가산.

※ 단, 이 조례 개정전부터 운동장을 관리이용하는 단체에는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u>양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u>	<u>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u>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u> 양주시 청소년 수련관 (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 -----.
제3조 <생략>	제3조 <현행과 같음>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신설>	5. "이용료"라 함은 수련관의 시설 일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낙 받은자 또는 수탁자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6.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4조(업무) <생략>	제4조(업무) <현행과 같음>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4. 시설 사용료 징수 및 안내	4. 시설 이용료 징수 및 안내
5. 청소년교육 및 상담	5.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활동과 생활체육 활동사업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제8조(위탁계약) ① <생략>	제8조(위탁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 해지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년간 예상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제>

현 행	개 정(안)
<p>제10조(<u>위탁의 취소</u>)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u>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수탁자가 조건을 위반한 때 5. 기타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 	<p>제10조(<u>위탁계약의 해지</u>)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u>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시장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p>제11조(<u>사용허가</u>) ① 수련관시설을 <u>사용하고자</u> 하는 자는 <u>시장의 허가를</u> 받아야 하며,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허가를</u>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이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조(<u>이용신청</u>) ① 수련관시설을 <u>이용하고자</u> 하는 자는 <u>시장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u> 받아야 하며,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승낙을</u>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주소, 성명, <u>이용할 시설, 이용목적, 이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u></p> <p>③ 청소년의 수련활동 중에는 모든 시설의 이용에 우선한다. 단, 청소년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신설></p>	<p>제11조의1(<u>시설이용의 우선순위</u>) 수련시설을 <u>이용하고자</u>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u>시설이용을 승낙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수련행사 2. 청소년 수련활동 3. 기업체 임직원 연수 4. 단체 세미나 활동 5.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 6. 기타 가족단위 이용
<p>제12조(<u>사용허가 제한</u>)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생략>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제12조(<u>이용 제한</u>) 수련시설을 <u>이용하는</u> 자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현행과 같음> <삭제>

현 행	개 정(안)
<p><u>제13조(사용료)</u> ① 수련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가상승에 따른 사용료 인상·인하 요인 발생시에는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p> <p><u>제14조(허가의 취소)</u>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련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공용공익상 필요한 경우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p>	<p><u>제13조(이용료)</u> ① 수련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이용 승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p> <p><u>제14조(이용승낙의 취소)</u>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낙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이용료를 체납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련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p><삭제></p> <p><삭제></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p>
<p><u>제15조(사용료 감면)</u> ①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수련관을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생략> 3. 경제적·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이용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신설></p> <p><신설></p> <p>② 시 지역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단체로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관내 주민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p>	<p><u>제15조(이용료 감면)</u>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공익을 목적으로 수련관을 이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 <현행과 같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자녀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청소년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가족 또는 유족 <p>② 시 지역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단체로 수련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준별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관내 주민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p>

현 행	개 정(안)
<p>제16조(보증금)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정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정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p> <p>③ 보증금은 시설 및 설비훼손에 의한 원상복구 비로 충당할 수 있다.</p>	<p><삭제></p>
<p>제17조(사용료 반환) 이미 받은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p> <p>1. 제14조제1항제4호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2~3. <생략></p> <p>4. 시설 등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임을 신고한 경우(다만, 당해일을 제외한 잔여일 해당금액을 반환한다.)</p>	<p>제17조(이용료 반환) 이미 받은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p> <p>1.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2~3. <현행과 같음></p> <p>4. 시설 등 이용일 이후에 이용하지 아니한 것임을 신고한 경우(다만, 당해일을 제외한 잔여일 해당금액을 반환한다.)</p>
<p>제18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8조(이용중단 신고) 이용자는 이용승낙기간 만료전에 이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9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9조(권리의 양도금지) 이용자-----</p> <p>-----시장 또는 수탁자-----</p> <p>-----.</p>
<p>제20조(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중단하고자하는 때에는 종료와 동시에 행사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경사를 받아야 한다.</p> <p>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p>	<p>제20조(원상복구)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p> <p>-----</p> <p>----- 시장 또는 수탁자-----</p> <p>-----.</p> <p>② 이용자-----</p> <p>----- 이용자-----</p> <p>-----.</p>

현 행	개 정(안)
<p>제21조(손해배상) ① <u>시장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p> <p>② <u>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련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u></p> <p>③ <u>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모든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u></p>	<p>제21조(손해배상) ① <u>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용자-----</u></p> <p>-----.</p> <p>② <u>이용자는 이용자-----</u></p> <p>-----</p> <p>-----.</p> <p>③ <u>이용자-----</u></p> <p>-----<u>이용자-----</u></p> <p>-----</p>
<p>제22조(강사) ① <u>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수련프로그램개발 및 수련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u></p> <p>② <u>강사의 채용자격 및 구비서류, 채용계약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u></p>	<p>제22조(강사 초빙 등) ① <u>시장 또는 수탁자가-----</u></p> <p>-----.</p> <p>② <u>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빙된 강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u></p>
<p>제23조(강사의 보수) <u>강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u></p>	<p><삭제></p>
<p>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 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재무회계규칙등을 준용한다.</p>	<p>제25조(준용)-----</p> <p>-----「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양주시재무회계규칙」, 「양주시사무의인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p>

양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2003. 10. 19 조례 제7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양주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수련관은 양주시 덕계동 755-2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수련관"이라 함은 본관, 숙박시설, 체육시설, 야외공연장, 기타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3. "일반"이라 함은 25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4. "단체"라 함은 20인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업무) 수련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체력단련과 덕성함양을 위한 수련계획의 수립 시행
2. 수련관내의 시설보호·관리·감독
3.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시행 및 대외 홍보
4. 시설 사용료 징수 및 안내
5. 청소년교육 및 상담
6. 기타 수련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련관에 두는 공무원) ①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직종과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수련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수련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시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물권 제공,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수련관의 시설 및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시장의 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증증권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년간 예상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복지증진·수련 활동·인성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수탁자가 조건을 위반한 때
5. 기타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

제11조(사용허가) ①수련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이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지도자의 인솔없이 입소하는 청소년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 ①수련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가상승에 따른 사용료 인상·인하요인 발생시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다.

1.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련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공용·공익상 필요한 경우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 한다.

제15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수련관을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3. 경제적·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이용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 지역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단체로 수련관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관내 주민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6조(보증금)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정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③ 보증금은 시설 및 설비훼손에 의한 원상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반환) 이미 받은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중지된 경우
3. 시설등 사용일 5일이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임을 신고한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후 반환한다.)
4. 시설등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임을 신고한 경우(다만, 당해일을 제외한 잔여일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제18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중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료와 동시에 행사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21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련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모든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2조(강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수련프로그램개발 및 수련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채용자격 및 구비서류, 채용계약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23조(강사의 보수) 강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2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 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제13조관련)

(단위 : 원)

구 분	청 소 년		일 반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수련비용	18,600	16,900	31,200	28,100
생활관 이용료 (1인1박)	5,400	4,800	10,800	9,600
급식비 (1인1일3식)	10,000 (1식당 3,500)	9,600 (1식당 3,500)	15,000 (1식당 5,000)	13,500 (1식당 4,500)
수련활동 지원비	1,500	1,400	3,000	2,800
설사용료	1,200	1,100	2,400	2,200

※ 다만, 중학생이하 청소년 및 소아는 상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적용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조 (이용료 및 수련비용)

- 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31조 (수련시설의 이용)

-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이용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1.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당해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이용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부과 현황

(단위:원)

구분		양주시 청소년수련관 (현행)	양주시 청소년수련관 (조례개정안)	김포시 청소년수련원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안산시)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양평군 청소년수련원	평택시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유아	숙박비	-	숙박비 5,000 각 시설이용료 1,500	4,000	초등학생 요금 적용	초등학생 요금 적용	초등학생 요금 적용	초등학생 요금 적용
	식비(3식(1식)/1인)	-	9,000 (3,000)	8,310 (2,770)				
	수련비	-	5,000	3,900				
초등 학생	숙박비	숙박비 4,800 각 시설사용료 1,100	숙박비 7,000 각 시설이용료 1,500	숙박비 7,600 각 시설이용료 별도 적용	숙박비 6,000 각 시설이용료 별도 적용	숙박비 3,600 각 시설이용료 1,000	19,190 숙박·식비, 수련활동비 포함	숙박비 6,700 각 시설이용료 별도 적용
	식비(3식(1식)/1인)	10,500 (3,500)	11,400 (3,800)	11,490 (3,830)	10,500 (3,500)	10,500 (3,500)		10,800 (3,600)
	수련비	1,400	5,000	6,300	3,500	2,000		5,000
중학 생	숙박비	숙박비 4,800 각 시설사용료 1,100	숙박비 7,000 각 시설이용료 1,500	숙박비 7,700 각 시설이용료 별도 적용	숙박비 6,600 각 시설이용료 별도 적용	숙박비 3,600 각 시설이용료 1,000	19,190 숙박·식비, 수련활동비 포함	숙박비 7,100 각 시설이용료 별도 적용
	식비(3식(1식)/1인)	10,500 (3,500)	12,000 (4,000)	11,850 (3,950)	11,400 (3,800)	10,500 (3,500)		11,400 (3,800)
	수련비	1,400	5,000	6,900	4,000	2,000		5,000
고등 학생	숙박비	숙박비 4,800 각 시설사용료 1,100	숙박비 7,000 각 시설이용료 1,500	숙박비 8,200 각 시설이용료 별도 적용	숙박비 7,000 각 시설이용료 별도 적용	숙박비 4,000 각 시설이용료 1,000	20,200 숙박·식비, 수련활동비 포함	숙박비 7,100 각 시설이용료 별도 적용
	식비(3식(1식)/1인)	10,500 (3,500)	12,600 (4,200)	12,150 (4,050)	12,000 (4,000)	11,400 (3,800)		11,400 (3,800)
	수련비	1,400	5,000	7,100	4,000	2,000		5,000
대학 생	숙박비	숙박비 4,800 각 시설사용료 1,100	성인요금 800	숙박비 8,200 각 시설이용료 별도 적용	숙박비 7,000 각 시설이용료 별도 적용	숙박비 4,000 각 시설이용료 1,000	20,200 숙박·식비, 수련활동비 포함	숙박비 7,300 각 시설이용료 별도 적용
	식비(3식(1식)/1인)	10,500 (3,500)		12,150 (4,050)	12,000 (4,000)	11,400 (3,800)		11,700 (3,900)
	수련비	1,400		3,000	4,000	2,000		3,000
성인	숙박비	숙박비 9,600 각 시설사용료 2,200	숙박비 10,000 각 시설이용료 1,500	숙박비 8,500 각 시설이용료 별도 적용	숙박비 9,000 각 시설이용료 별도 적용	숙박비 6,000 각 시설이용료 2,000	33,500 숙박·식비, 수련활동비 포함	숙박비 9,500 각 시설이용료 별도 적용
	식비(3식(1식)/1인)	13,500 (4,500)	15,000 (5,000)	14,400 (4,800)	15,000 (5,000)	13,500 (4,500)		조·중식: 5,000 소·식: 5,500
	수련비	2,800	5,000	7,100	수련활동 없음	수련활동 없음		수련활동 없음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부과 현황

(단위:원)

구분		양주시 청소년수련관 (현행)	양주시 청소년수련관 (조례개정안)	김포시 청소년수련원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안산시)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양평군 청소년수련원	평택시무룡산 청소년수련원
수영장	초등생 이하	-	수련생 3,000 일반 5,000	4,000	2,000	2,000	1,500	4,000
	중고생	-	수련생 3,000 일반 5,000	5,000		2,500	1,500	4,500
	대학생 이상	-	수련생 3,000 일반 5,000	7,000		3,000	2,500	5,000
	단체	-	초	3,000		1명당 500원 할인	1명당 500원 할인	단체 할인 요금 없음
				3,500				
			중고	3,000				
				4,000				
			대	3,000				
				4,500				
강당	대강당	-	200,000 (1회 4시간)	200,000 (1회 2시간) 1시간 초과시 20%가산	300,000 (1회 4시간)	강당 없음	400,000 (1회 4시간)	200,000 (1회 4시간)
	소강당	-	100,000 (1회 4시간)	소강당 없음	소강당 없음		120,000 (1회 4시간)	100,000 (1회 4시간)
	세미나 실	-	60,000 (1회 4시간)	세미나실 없음	세미나실 없음		50,000 (1회 4시간)	20,000 (1회 4시간)
운동장	축구장	-	일반평일 4시간(주) 30,000 (원) 40,000	경기평일 6시간(주) 150,000 (원) 225,000	200,000 (1회 2시간) 1시간 초과시 20%가산	100,000 (4시간)	운동장 없음	500,000 (1회 4시간)
			일반공휴일 4시간(주) 40,000 (원) 60,000	경기공휴일 6시간(주) 225,000 (원) 337,000				
캠프 파이어	선유및 장작, 화초	-	100,000	100,000	캠프파이어 없음	캠프파이어 없음	캠프파이어 없음	캠프파이어 없음
다목적 구장	농구장, 탁구장, 배구장		20,000 (1회 4시간)	수련활동시안 사용 (개별 대관없음)	다목적구장 없음	다목적구장 없음	다목적구장 없음	다목적구장 없음